

- 재산세 과세대상 : 선박, 항공기, 특수부대설비(부수시설물), 구축물(레저시설 등 건축물)
- 지역개발세 : 지하자원(광물)

기타물건의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건물과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적용이 중단된 적이 있으나 그 적용문제에 대하여는 건물과표에서 설명한 부분을 참조하기 바라며 또한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절차가 대폭 조정이 되었다. 즉, 기타물건 전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선박의 경우 종전과 같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콘도·체육시설회원권은 시도지사가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종전에는 전국권형유지 차원에서 시도의 권형조정을 한 후 기타물건에 대한 조정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으로 조정기준을 권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물건의 경우 과세요건 성립시점에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 특히 급격하게 하락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소급하여 기타물건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내용

기타물건에 대한 과표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대상물건별 시가를 전국권형 조정 후 내년도 경제여건 및 물건의 거래전망 등을 고려하여 동결 내지 소폭 인상조정하고, 가격하락분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한편 신규, 과세누락 물건이 있는 경우 철저한 시가조사 반영하여 조장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타물건에 대한 과표조정은 전국적인 권형조정으로 자치단체간의 권형이 필요한